

광고신도시 A28블럭 이던하우스 입주자 모집공고

□ 수월시 및 용인시는 2008.11.7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음 (단,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해당제한 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적용됨)

구분	구분	제한사항	제한사항
전용면적 85㎡ 이하		담청일로부터 10년	분양권 전매 제한
관계법령이 개정될 시 개정내용에 따라 위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최초 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5년

※ 관계법령이 개정될 시 개정내용에 따라 위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분양가격상한제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마이너스율선제 적용 주택이며, 청약접수는 건축한 주택에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 önem 받으시어 인터넷 청약 가입 하신 후 해당사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발급받은 시점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경기도 광고신도시(개척지구 내 A28블럭) □ 공급규모 및 면적: 지하 2층, 지상 30층 아파트 및 부대시설 총 700세대 (특별공급 총 91세대(일반 특별공급: 70세대, 3세대 특별공급: 21세대) 포함) □ 대지면적: 44,103.00㎡
 □ 공급면적: □ 공급면적 (모바일뷰) □ 공급규모 및 면적: 지하 2층, 지상 30층 아파트 및 부대시설 총 700세대 (특별공급 총 91세대(일반 특별공급: 70세대, 3세대 특별공급: 21세대) 포함) □ 대지면적: 44,103.00㎡ (단위: m)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바일번호)	주택형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총수 (최고층)					
				일반	3차년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세대별기타 공용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국민주택	81916-01	2008001066(01)	113,149A	286	29	8	25	224	84,982	28,167	113,149	52,340	165,489	62,204	30층
	81916-02	2008001066(02)	111,952B	293	29	9	25	230	84,828	27,124	111,952	52,260	164,212	62,091	30층
	81916-03	2008001066(03)	114,431C	121	12	4	10	95	84,990	29,441	114,431	52,325	166,756	62,210	27층

※ 3차년 특별공급 세대의 지역별 세부분할현황은 아래 3차년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표를 참조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 ※ 전용면적에 포함된 발코니 초라면적 (113,149A: 0.636㎡ / 111,952B: 0.531㎡ / 114,431C: 0.482㎡)
 □ 공급규모 (※ 공급규모에 따라 마이너스율선제 여부 따라 각각 상이한 금액이 적용됨) - 마이너스율선제 미 선택형 (일반형)

주택형	층별 (층)	공급 세대	분양가격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						잔금(30%) (입주시정당)		
			대지면	건축비	합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113.149A	1층	9	212,712,758	169,117,242	381,830,000	38,183,000	38,183,000	38,183,000	38,183,000	38,183,000	38,183,000	38,183,000	38,183,000	38,183,000	114,549,000
	2층	9	212,712,758	181,567,242	394,280,000	39,428,000	39,428,000	39,428,000	39,428,000	39,428,000	39,428,000	39,428,000	39,428,000	39,428,000	118,284,000
	3층	12	212,712,758	194,017,242	406,730,000	40,673,000	40,673,000	40,673,000	40,673,000	40,673,000	40,673,000	40,673,000	40,673,000	40,673,000	122,019,000
	기초층	244	212,712,758	202,317,242	415,030,000	41,503,000	41,503,000	41,503,000	41,503,000	41,503,000	41,503,000	41,503,000	41,503,000	41,503,000	124,509,000
	최상층	12	212,712,758	214,767,242	427,480,000	42,748,000	42,748,000	42,748,000	42,748,000	42,748,000	42,748,000	42,748,000	42,748,000	42,748,000	128,244,0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08.12.26) 내용에서 변경 입주자모집공고(2009.01.05) 내용을 수정한 공고입니다.
 - 마이너스율선제 선택형 (기본제공률목 선택 시공방)

주택형	층별 (층)	공급 세대	분양가격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						잔금(30%) (입주시정당)	
			대지면	건축비	합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113.149A	1층	9	212,712,758	150,217,242	362,930,000	36,293,000	36,293,000	36,293,000	36,293,000	36,293,000	36,293,000	36,293,000	36,293,000	108,879,000
	2층	9	212,712,758	162,047,242	374,760,000	37,476,000	37,476,000	37,476,000	37,476,000	37,476,000	37,476,000	37,476,000	37,476,000	112,428,000
	3층	12	212,712,758	173,887,242	386,60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38,660,000	115,980,000
	기초층	244	212,712,758	181,777,242	394,490,000	39,449,000	39,449,000	39,449,000	39,449,000	39,449,000	39,449,000	39,449,000	39,449,000	118,347,000
	최상층	12	212,712,758	193,607,242	406,320,000	40,632,000	40,632,000	40,632,000	40,632,000	40,632,000	40,632,000	40,632,000	40,632,000	121,896,00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08.12.26) 내용에서 변경 입주자모집공고(2009.01.05) 내용을 수정한 공고입니다.
 ● 상가 주택에 주택, 제3호의2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며, 공급총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형(타입별), 층별목 적의 조차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통 소유권이전 등(보증, 등록, 취득)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에 당해 주택의 건축비용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용 제외)의 50% 이상인 경우이며, 동일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경우 전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음
 ● 중도금에 당해 주택의 건축비용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용 제외)의 50% 이상인 경우이며, 동일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경우 전후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음
 ● 단기간 사용가능성을 기준으로 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에 관한 규정은 2008.12.26 기준에 의거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주택은 주택, 제3호의2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며
 ● 상기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된 재래주택 및 세대별 프로젝트 당첨주택(10억) 동안 계약금(계약) 제한하며, 주택형, 제3호의2의2의2에 의해 당해 주택의 주택공급제한 최초 체결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전액(계약금) 제한하며,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 위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금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됨 ● 층수는 건립 단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종 층수임
 ● 세대별 계약금의 총 추가공용면적은 세대, 분도, 전실, AD, PD, 비체공유 등 공동주택의 자산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실, 영도방, 경비실, 기실 등 별도의 면적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음
 ● 특별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에 배정된 세대 중 신청입주율과 미달된 잔여세대의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상기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한시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며, 면적 조건은 만 나이로 기준으로 함
 ■ 신청자격 및 공급방식
 1. 특별공급
 ①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호 제3항)
 -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08.12.26) 한미 투주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간의 신청을 받으면 본 (단, 특별공급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제한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공급세대: 85㎡이하 주택 건설비용의 10%범위 이내로 총 70세대 (113,149A: 29세대, 111,952B: 29세대, 114,431C: 12세대)
 - 대상 기준

구분	도시계획시설기준(1)	당해지역	제한사항	제한사항	중소기업근로자 / 도시계획시설기 / 무주택세대주
비율	최우선 (24세대)	우선 (요청대상 우선배정)	가 (최우선 및 우선세대 제외율량의 30% 이내)	나 (최우선 및 우선세대 제외율량의 30% 이내)	다 (최우선 / 우선 / 가 / 나 항목 배정 후 잔여분량)
	①	②	③	④	⑤

(1) 도시계획시설기준: 용인시에서 시 지정 통보된 24세대에게 최우선공급 (2) 장애인: 용인시 선정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공급 (3) 중소기업근로자: 경기도내 중소기업업종에 선정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4) 도시계획 시설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시설기(지역)에 추천한 자 (5) 무주택세대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선정된 무주택세대주인 공무원
 구분 대상자 배정 기준 비고
 최우선 도시계획시설기준 (용인시에서 시 지정 통보된 24세대에게 최우선공급) 최우선 배정 (24세대) 대상자가 없는 경우 우선순위로 풀림배정, 낙첨자는 미달 주택형 추천 배정
 우선 당해 지역인사 기준에 의거한 배정 기준 대상자가 없는 경우 가, 나, 다 항목 배정, 낙첨자는 미달 주택형 추천 배정
 나 보충대상자(국·공립유치원, 5.18민중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최우선, 우선순위로 배정풀림을 제외한 잔여분량의 30% 이내 미 신청분은 다 항목으로 풀림배정
 다 장애인 최우선, 우선순위로 배정풀림을 제외한 잔여분량의 30% 이내 미 신청분은 다 항목으로 풀림배정
 다 중소기업근로자 / 도시계획시설기 / 무주택세대주 최우선 / 우선 / 가 / 나 항목 배정 후 잔여분량 다 항목 내 1:1 호크 경쟁 시 (30%이내), (240%이내), (240%이내), (240%이내) 우선순위로 풀림배정, 풀림배정(2) 및 전액세금 반환 시(3) 우선순위로 풀림배정
 ※ 최우선 및 우선순위 접수자 중 신청 주택형의 청약경쟁률이 낙첨률 발생시, 청약 미달된 후 주택형의 잔여분량을 가, 나, 다 항목에 우선하여 추천 배정함
 ※ 최우선 및 우선순위 공급 후 각 주택형별 잔여분량과 가, 나, 다 항목의 신청자수를 대비하여, 청약경쟁률이 1:1 이하 일시 해당 주택형에 신청한 가, 나, 다 항목 신청자 전원미 신청됨
 ※ 최우선, 우선, 가, 나 항목 공급 후 각 주택형별 잔여분량과 다 항목의 신청자수를 대비하여, 청약경쟁률이 1:1 이하 일시 해당 주택형에 신청한 다 항목 신청자 전원미 신청됨
 ※ 낙첨된 잔여분량 추천 배정 시 주택형별 신청자가 선택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추천하여 배정하며, 당첨된 자는 당첨지역 관리실 (낙첨 시 잔여분량에 대한 추천의 참가 여부는 최초 신청 접수 시 선택 할 수 있음)
 ※ 낙첨된 잔여분량 추천까지 완료 후 잔여분량 발생 시에는 일반공급 풀림으로 전환 됨

2) 3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2.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자녀 3녀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원 세대주에게 건설물의 3%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함)
 - 특별공급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후 아직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인봉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도 포함됨 단, 입양 중에는 태어난 제외됨
 - 당첨자 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배정에 의한 접수 순에 따라 대상으로 선정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거주자 40%, 인천광역시 거주자 10% 비율로 다음과 같이 각각 공급함 (단,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1:1 이하 일시 지역별만 하지 않음)
 - 공급세대 : 총 주택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총 21세대
 - 3자녀 특별공급 배정표

평점요소	총배점	기 준	점 수	해당사항	비 고
계	100				
자녀수 (1)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자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2자녀 이상	10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속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1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인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지역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도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동창자(친)자녀 :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1),(2)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3)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113,149A	111,952B	114,431C	계
일반·특별공급	29	29	12	70
3자녀 특별공급	경기도(50%)	4	2	10
	서울시(40%)	3	4	9
	인천시(10%)	1	1	2
계	37	38	16	91

4)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일반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2.26) 현재 무주택세대주 임종서류(친족증거서류 또는 친족확인내역증본, 세대주부부명세서, 기타 무주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1종)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인감도장 · 해당기간의 추후세 또는 인선서 1통 (특별공급의 경우 할부 주택에서 특별공급으로 발급한 주택임용명세서만 인정함(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단독세대 및 배우자분리세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3자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권외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 무주택사실(접수장소에 비치) · 혼인관계 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신청한자에 한함) · 지방임용명세서만 인정함(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 주민등록등본 등 · 소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간)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됨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문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무자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증 등 소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간)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5) 기타사항

- 출생장 및 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미성시 전액환급 일반공급으로 전액환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사 또는 확인결과 평점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등이 및 유주택, 분양가 상한제적용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이 당첨 받은 등 무자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완료 후 부처의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 배정량만큼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2. 노후무우선급 및 일반공급

1)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08.12.26)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수형시 또는 원시시 중 어느 한 지역에서 1년 이상(2007.12.26 이전)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형시 또는 원시시 어느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할부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포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수형시 또는 원시시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2007.12.27 이후 전입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전으로 청약 가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형시 또는 원시시 중 어느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직전 거주지역이 원시시 또는 수형시라 하더라도 현재 거주지역에서의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2007.12.27 이후 전입자)인 수도권 거주자 청약자격으로 청약하여야 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전역은 전역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분양당첨(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주택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일반공급에 주택 기증장차 또는 기증장차가 된 자의 세대내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신청은 취소되어 불가함
- 노후무우선급 신청 조건이 변경되는 등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지역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노후무우선급 신청 미달시 잔여세대는 일반 공급세대 세대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노후무우선급 신청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분양비율에서 관련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 후 (주민등록상 확인)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신청자격

구 분	순 위	신청 자 격
특별공급 (일반/3자녀)		-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구비한 분 (위 '1.특별공급' 참조)
노후무우선급	1순위	- 청약자격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회 이상 납입한 분(단, '90.04.28 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 납입한 분) 중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12.26)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유주택세대주(미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2순위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내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3순위	- 재선순위 및 재선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내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 청약신청서 문에는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서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를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명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서 유의하시기 바람
- 원고 이원하수의 당첨제(배우자발표일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청약자 본인(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인 가능하나 노후, 장애 등을 제외하는 은행 상주에서의 청약은 불가함 (노후, 장애 청구가능 가능 시간 : 09:30 ~ 16:30, 단, 청약자격 기준에서 제외)
- 1, 2순위에서 경쟁이 발생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의 무주택세대주기간, 청약자격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잔액에 등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 세부신청순서가 적용됨
- 1, 2순위 청약자 세부신청순차 및 주택소유부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입주자선정방법'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일정

신청자격	접수일자	거주구분	청약접수시간 / 시간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2008.12.31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건본주택 (11:00~16:00)	-추첨일시 : 2009. 1. 2 14:00 -추첨장소 : 당사 건본주택
일반공급	노후무우선급	수형시 · 원시시	- 인터넷 ○ 국민은행 www.kbstar.com	- 발표일 : 2009. 1.16 - 장소 : 당사 홈페이지 - 2009. 1.16자 문화빌딩, 건설경제, 아시아경제 신문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1순위	수형시 · 원시시 · 경기도	- 시간 : 08:30~18:00 - 국민은행 인터넷 - 시간 : 08:30 ~ 18:00	당첨자 명단은 당사 홈페이지 및 상기 신문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어 임대 개발 서면통지는 하지않음 (전화번호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지시 바람니다)
		수형시 · 원시시		
2순위	2009.1.8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3순위	2009.1.9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국민주택 청약신청서 유의사항

- 국민주택은 청약자격 가입자인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자격 입력기재 오류함

1. 청약신청서 유의사항
 - 청약신청서 은연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므로 청약자격서는 청약 이전에 본인의 청약자격(가주자격, 거주계시일,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을 확인하여, 청약신청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자격 기입요령
 - 거주지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 군 단위의 거주지역(주택건설지역)
 - 거주계시일: 상기 거주지역(주택건설지역)의 전입일자를 기재(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확인)
 - 무주택세대주 기간: 무주택기간과 주민등록특수지역으로 확인된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하여 기재 (예: 시 ① 호 세대주 인정기간(연도) 무주택세대주기간 → 무주택세대주기간: 3년 ② 호 세대주 인정기간(연도) 무주택기간(연도) → 무주택세대주기간: 6년)
 - 무주택세대주와 합동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등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동일혈연 세대원을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입력
 -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특수지역 세대주로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함(세대주 인정기간 상정에 관한 유의사항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부양가족수: 청약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 인정기간과 동일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함
 - 3. 세대주에서 당청자가 인하여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당첨이후 청약자격을 확인하여, 청약자격이 상이하여 부적격 인정될 경우 당첨서류, 당첨된 청약통장 지사용역지 및 당첨자 관리 등 불이익을 받음)
 - 4. 청약신청서 청약자격 척외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접수인용 및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세대주 인정기간 상정에 관한 유의사항

- 1) 세대주 인정기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선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민등록 일시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2)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 ① 세대주가 사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 건물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용기부 등본상 등기사항필수정보주택관리등록분리제외(가주용)임
- 주택은 전세로 소재하는 재산에 과세징역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동업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와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부부 전산감사결과와 부장직위로 판정되어 전이 판정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신청서 기재 소명요청을 통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부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부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1) 권리주체(세대주)가 명의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여 이를 분할·양도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처분한 경우
 - 2) 주택의 범위: 건물용기부 등본, 건물용관리대상 등에 등재된 전권 소재 주택(주택의 지배권이나 주택소유권이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3) 주택권을 기준으로(제호와 제종으로 일치)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용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2) 건축물 관리대장: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부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4)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자를 상속한 상속인이 사망후에나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민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항목 1에 해당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거나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혼한 경우
 - ① 사용권서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가 건립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④ 세무사실 사업자로 인한 7년이상 경과된 주택 ⑤ 근로자의 소득과 사용자의 위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정무사실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⑦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가) 공부상 제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폐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신청접수방법

- 1) 신청접수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우편 없이 주택행복포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2.26) 현재 수립 또는 용인시 또는 한 지역에서 1년 이상(2007.12.26 이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당해지역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립 또는 용인시 또는 한 지역에서 거주는 하고 있던 해당지역에서의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포함)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노부모부양우선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2순위,3순위))로 지정된 날짜에 같이 접수하고, 1순위는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신청접수결과에 상관없이 전주택별 청약접수율을 받지만 2 ~ 3순위에는 순위의 신청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할 주택행복에 한해서 우선 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와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순위에요 앞단공급 세대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청약순위에 접수 및 용인시에 대한 공급세대 세부배분은 아래 참조. 나머지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통상순위 1에서 당청지역 거주자 신청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순의 당해지역수순위 → 용인시, 용인시 → 수도권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최종 미달된 세대에 대해 수도권 거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수도권 거주자 신청수결과 미달되는 잔여분은 각각 시, 군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 (차순위 공급세대 배분 방식 및 공급순위 또한 순위에 동일함)
 - 당청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세대수 30%는 다시 그 중 88%를 수순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12%는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배분하여 공급하며, 배분된 공급세대에 단수가 발생할 경우 2.2순위에 이하는 자가 그 지역에 배분한 (단, 2.2순위에 이하는 수순위와 동일시한 경우에는 수순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배분함)
 - 당청지역 거주자 차이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립 또는 용인시 또는 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 지역 거주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재수행자와 용인시 각 지역에 전입제한일(2007.12.2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됨 (※ 수순위와 동일시한 경우 거주 현실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두 지역에 각각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선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현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당청지역 거주 여부 판단함)
 - 예시: 용인시에 6개월 거주자 2명이라 수순위 2로 선정되어 7개월 경과한 자는 수순위 1년 미만 거주자이므로 수도권거주자 지역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 2) 신청접수 유의사항
 - 청약 신청서 신청자의 척외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 신청서 은연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이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신청서 입력한대로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 청약신청서를 하고자 하는 분은 본인의 청약자격(가주자격, 무주택세대주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서 신청자 척외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연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3) 인터넷 청약 이의발령방법

구 분	국민은행 (구 주택은행 포함) 청약접수를 가입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접수를 가입할 분
이용대상	▶ 청약자격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 2순위: 청약 접수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국민은행 인터넷 청약 접수자 중 청약접수 3순위 청약신청서 이상의 잔액이 있는 분 (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이용방법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접수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1, 2순위: 청약자격 가입은행 비제, 3순위: 국민은행 비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청약자격제 증명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1, 2순위에게 한함)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접수 (1, 2순위에게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청약신청금(제3순위 신청자에게 한함)
제3차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서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방사선 등사 간행주택에 비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신청서위임장)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제외대상은 국내나 신고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주민등록증 제출 불가함

5) 3순위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구 분	전주대책	청구 청약자 신청금 납부방법
청 약 신 청 금	500만원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입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방법
 - 할 목 기 간: 당청자 발표일 익영업일 이후 2009. 1. 19 부터 (월요일: 09:30 ~ 16:30,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 불 소: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 - 지점 (단, 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지정계좌로 이체 신청한 분은 청약자 발표 영업일에도 해당 계좌로 자동 환불됨)
 - 환불시 구비서류: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연수증, 주민등록증, 청약 당시 인장 또는 본인 혹은 배우자 서명(서면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사에 한함)
 - ① 본인 혹은 배우자 환불시: 상기 서류 외에는 제3차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주택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장) 1통, 인감증명서, 위임장
 - ② 제3차 대리 환불시: 상기 서류 외에는 제3차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주택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장) 1통, 인감증명서, 위임장
 - ③ 재3순위 당청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음 국민은행 본 - 지점에서는 환불방식이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에 대한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 방법

구 분	선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일반/3차)	- 시, 군 본주택에서 신청자 인화하여 공개추첨에 의해 동 - 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불량이 아닐시 경우, 잔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국민은행 컴퓨터 추첨에 의해 청약자격 가입은행 구별 없이 노부모부양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각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별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각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노부모부양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중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세부선정순위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일반공급 (1/2/3순위)	(선용면적 40㎡초과 국민주택 세부선정순서) ① 단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금에 납입금의 60%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소득층이 많은 자 ②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소득층이 많은 자 ③ 저소득층이 많은 자 ④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각 순위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청지역 거주(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립 또는 용인시 또는 한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자 중 청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도권 거주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 거주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선정방식은 위와 동일함 - 입주자 선정시 각 주택행복 순위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특별공급전 세대수 제외)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순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행복 공급세대수(특별공급 전 세대수 제외)의 20%의 범위 안에서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주택행복 3순위까지의 총신청접수자가 공급세대수(특별공급 전 세대수 제외)의 12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미 계약세대 또는 계약 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입주자는 선정된 이후에는 당청자로 관리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순위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의거하여(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에도 동 - 호수를 배정할 동 - 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청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ARS 당청확인서비스 이용방법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만 발표대상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인터넷	▶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청확인 → 주택별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청약센터 → 당청자 조회
ARS	▶ 이용방법: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701]	▶ 금융결제원 콜센터(1369) [서비스코드: 5#]
휴대폰 문자서비스	▶ 이용방법: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서 휴대전화번호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청약신청서 SMS 당청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09. 1. 16 ~ 2009. 1. 25 (10일)	▶ 2009. 1. 16 ~ 2009. 1. 25 (10일)
	▶ 2009. 1. 16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2009.1.3 ~ 1.9 (10:00~18:00) 일반에게 공개하고 추후 당첨자 발표(2009.1.16)이후에는 당첨자에 한하여 개방하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하고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보육시설 등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43조의 2의 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에 다음 항목에 한해 분양가를 공시해야함
 ○ 분양가상의 범위와 공시대상은 사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가의 영입비율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항목별 금액은 추정가격으로 중공시 소요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단위 :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합계	288,965,560,000	철골공사	276,623,328	급수급탕설비공사	3,604,580,116	
택지비	택지대입원가	135,584,119,540	철근콘크리트공사	35,538,860,813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1,202,409,272
	기간이자	7,587,532,492	조적공사	0	위생기구공사	2,008,991,165
	필요적 경비	22,353,753	미장공사	1,920,538,205	승강기계공사	2,726,727,813
	그밖의 비용공사비	5,594,534,189	단열공사	2,408,987,456	난방설비공사	2,409,632,526
	토공사	2,636,928,398	방수·방습공사	907,129,354	가스설비공사	256,929,979
토목	흙막이공사	0	목공사	1,376,222,932	자동차세설비공사	231,250,883
	비탈면보호공사	54,776,054	가구공사	3,185,541,207	특수설비공사	1,042,312,128
	중벽공사	0	금속공사	1,982,886,796	전기	6,957,050,315
	석축공사	34,893,095	지붕 및 환풍공사	321,537,013	정보통신	1,175,984,535
	우·오수공사	534,284,788	창호공사	4,600,412,353	소방설비	4,035,265,307
	공동구공사	162,203,259	유리공사	880,584,387	일반관리비	3,520,350,18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1,292,808	타일공사	2,273,850,673	이음	3,594,797,119
	도로보정공사	575,900,669	블록공사	3,280,456,197	설계비	2,757,304,000
	교통안전시설공사	0	도장공사	1,545,232,630	감리비	2,770,723,470
	정확조사설공사	0	도배공사	1,143,428,610	일반분양시설경비	2,830,760,000
건축	조경공사	6,583,066,490	수장공사	1,806,559,419	분담금 및 부담금	1,171,838,000
	부대시설공사	187,243,941	주방용구공사	1,532,733,403	보상비	0
	공동시설공사	1,348,593,131	합공사	1,530,061,402	기타 사법집행 경비	1,188,152,360
	가시성물공사	1,201,401,657			기타 행정건축비 가산비용	15,472,075,404
	지정 및 기초공사	0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1)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아래 표의 해당금액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구분	113.149A	주책형	114.431C	비고
계약자 부담	11,500,000	8,400,000	11,000,000	

- 2)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관공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05.12.2일 개정사항)
 · 시스토펬이전 및 빌트인 가전의 경우 건축공정이 40% 미만 이후에 유할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고 (단, 시스토펬 에어컨의 경우 단종의 제품을 제시할 수 있음)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비용에는 통째로, 유독재 등 재사용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금액은 일괄하여 사업비(발판금액)에 포함
 3)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세부내역

구분	내용	국 민 은 행	주 책 형	비 고
계약자 부담	290301-1-4-021227			· 입급시 비교란에 등·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함
수 취 인	용인지방공사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당첨된 등·호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마감제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용품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사항 항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제 항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 통배정대상에서 제외된 기본선택목재로, 시공시 입주자 산정일자,중 당첨신청 발표시 등·호까지 배정된 후 입점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등·호에 대하여 기본선택목재를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구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I	바닥재	합판마루, 목가(목재)마루(합판), 갈래바닥, 한라바닥(목재마루), 한라바닥(합판마루), 발코니 바닥(합판마루/합판)	바닥난방, 시멘트타일(난방배관 시공부위에 해당)
	벽, 천정 마감	벽지(초배합포) 및 벽체(아파트, 타일 등), 우물천정, 등박스, 반자동물림	시멘트벽돌, 경량콘크리트판넬,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벽 천정 도장, 경량천정물, 커튼박스
II	조명기구 외	부착형 조명등기구(메이닝기구 제외) 욕실메이닝등	전기배관, 배선,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등), 메인등기구(욕실메이닝 제외)
III	욕실	위생기구(대조, 세면대, 변기, 수전대, 대조, 욕실/화장실/수전대 포함), 화장실, 화장실/화장실 포함, 샤워부스 욕실, 욕실 인테리어 및 액세서리, 욕실 욕실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 방수, 천정방수 벽 초음파미장, 설비 배관, 전기 배관/배선
IV	주방가구 및 가구	주방가구 및 가구(스락대 포함), 주방방타일, 주방라디오문,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부스(메이닝포 포함)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 시멘트벽돌, 경량콘크리트판넬
V	가구	선반장, 드레스룸장, 반창기구(문턱포함) 등 가구 일체	-
VI	창호	문틀(상부바라막, 문선 포함) 문책(각 창실문, 욕실문, 미닫이도어, 헤드웨어), 디지털도어록	문틀(사출 및 욕실문 하부설 포함),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P-현호

- 3)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 사항
 · 시공계약 체결 및 전공 내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약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행사(본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 등록업자 또는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함 [※용인시 관할 구역 내의 실내건축공사 등록업자 현황 참고(분양사무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을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서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실내공사 계약시 계약서에 하자(이행보증포함)가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증금액은 스스로 집주인이 리스크를 인지 하도록 하시기 바림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법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획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제45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획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변경 등에는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계약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경우 변경이 불가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 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음
 · 인정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정일자 : 2008년 11월 14일 · 인정번호 : 2008-0010
 * 인정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단지별 최솟값 표시)	점수
소음관련 등급		경향충격음	3	4
		중량충격음	4	3
		화장실 소음	2	9
		경계소음	2	6
		가변성	3	4
구조관련 등급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4	3
		공용부분	3	4
		내구성	3	3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1	6
		자연도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1	6
환경관련 등급	일조(빛환경)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3	4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2	8
		에너지성능(열환경)	2	13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1	3
		전용부분	3	5
생활환경 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공용부분	3	3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2	4
		배연 및 피난 설비	3	3
		내화 성능	2	4
		총점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	감리금액	비고
건 축	(주)아이티엔코 피래이션 건축사사무소	1,801,775,470	-
전 기	(주)케이제이충합엔지니어링	509,629,000	-
소 방	(주)아이티엔코 피래이션 건축사사무소	413,335,000	-
통 신	(주)케이제이충합엔지니어링	45,984,000	-

- 시행자 : 용인지방공사 ■ 시공자 : 경남기업(주)경남기업-총합남도-주택2004-001, 한화건설(주) (한화-경기도-주택2003-015) ■ 사이버모빌 하우스 : www.idunhaus.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동동 831-3 (TEL. 1588-0461)
 ■ 광고주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경기도시공사 고객지원센터(1588-0466)에서도 가능하오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의사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및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